

연구 담당

3, 1 ~ 4



.

,

.

.

.

.

,

.

.

,

.

,

.

-
- .
 ,
 .
 - 2000
 . ,
 ,
 . 2010 5
 ,
 - ‘ (community business)’
 .
 - ‘ (social enterprise)’
 ,
 2007 「 」 .
 - .

， ，

。

○ ， 2010 10

220 120 ，

61

(18.3%) ， 53 (44.2%)，

5 (4.2%)， 1 (0.8%) 。

○ ，

，

，

。

○

。

，

。

○

，

。()

，

。

○

， ，

v

.

.

.

ABSTRACT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corporating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 Korea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ssues of a joint business in rural areas and suggests it with an improved scheme, an incorporated. A joint business at community level is different from a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focused on agricultural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include various types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to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Rural area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has stimulated a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since 2000. Specific development plans such as Farm Experience Village, Rural Areas Traditional Theme, and Community Development Plan are known to inspire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o vitalize rural areas' economies by creation of new types of revenue. Based on these benefit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planned to organiz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as a united concept of a community business(CB) in May 2010.

Because the rural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are at its initial stage, this study was focused on case studies and summarized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The first step for the case studies was to classify a rural community business into an urban-rural interchange, a regional development, a joint agricultural management, etc. Then, the next step performs a comparison between cases which hav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and cases which do not hav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 successful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a governmental support catalyzes areas' revenue creation business. Second, a community leader evaluates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vitalizes community corporations.

Third, an agricultural corporation is established so as to secure a continuation of community business.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 operating regulation because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has residents as its members. Specially, the clarification should be focused on a profit share with participants and investors, a expenditure of cost from joint activities, and an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of joint facilities.

It is advisable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to be an association corporation which seeks for common benefits rather than a business organization which seeks for profits.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corresponds with an idea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because it has an collaborating business managements. Since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has characteristics of an agricultural business managem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 separate corporation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for example '(a tentativ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with a permission to have business to seek for profits such as a weekend farm, a green-tour system, an agricultural recreation business, and a region specific restaura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a verification system so as to stimulate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s role to create jobs for the aged in rural areas.

Researchers: Jeong-Ho Kim, Moon-Ho Park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제1장 서론

1.		1
2.		3
3.		3

제2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9
2.		12
3.		18

제3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법인화 실태

1.		23
2.		34
3.		48
4.		55

제4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추진 방안

1.		57
2.		62
1.	()	67
2.		86
		91

제2장

2 - 1.		11
2 - 2.		13
2 - 3.		13
2 - 4.		17
2 - 5.		19
2 - 6.	(2009)	19
2 - 7.	(2009)	20
2 - 8.	(2009)	21
2 - 9.	(2009)	21

제3장

3 - 1.	(2008)	24
3 - 2.	(2009)	25
3 - 3.		33
3 - 4.	(2010)	35

제4장

4 - 1.		59
4 - 2.		63

제3장

3 - 1.			29
3 - 2.	2		37
3 - 3.	2		37
3 - 4.			39
3 - 5.			39
3 - 6.			41
3 - 7.			41
3 - 8.			42
3 - 9.			42
3-10.			44
3-11.			44
3-12.			46
3-13.			46
3-14.			47
3-15.			50

제 1 장

1.

○

- 1990

- 2004

200

- 2009

○

-

2

，

·

-

，

·

○

·

-

，

，

，

，

·

-

，

·

○

·

-

2007 ‘ ’ ，

·

- 2010 4

‘ ’ ， 2010

·

- 「 」 (，

) ，

·

2.

○

()

3.

3.1. 마을공동조직의 추진 경과와 연구 동향

○

1970

,

.

-

. 1970

1991

,

.

-

1990

,

“

”

1993

『

.

』

.

4

○ 1981

(‘

’)

.

-

,

. 1980

.

-

,

1984

“

”

, 1990

“

”(14 2)

.

○

1989

4

‘

’

,

1990

「

」

.

-

,

.

-

1990

“

”()

,

-
- 1992
- “
- ”
-
- 1992 (42)
- ,
-
- 1990
- ,
- ,
- ,
- 2000
-
- 2001 (Green Tourism,)
- 2002 ‘ ,
-
- (2009),
- (2003) ,
- 2003 2004 36
- , 3~5 ,
-
- 2004
-

6

- 2008

- 2009

1

12

○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 ‘ (細内信孝)
1994 (,
)

-

-

2007 1 「

」 , 2010 10

406

○ 2010 5 (CB)

- ‘ ’ 2015 3,000
-
-
-
-
-
-
- 2010
- “ ”
- 2 , 2011
-

3.2. 공동사업 조직의 법인화 관련 연구

- 1990
-
- ,
- ,
- ,
-
- “
- ”(1994) “ ”(1997)
-
- 2000 “
- ”(2000) , “

”(2006)

.

○

.

,

.

- “ ”(2006)

.

- “ ”(2009)

,

.

○

.

- (social enterprise) CIC
(Community Interests Company), IPS(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

- 1990

,

‘

,

‘

,

.

제2 장

1.

- 1990 4 「 (4228) ,
8 , 11

.

-

, 1990 11

.

- 1990

.

-

,

3ha

.

- 1994

,

.

-

.

10

○ 1994

(,).
- . ,
1/2 , ,
1/2 .

○ 2002

().
- 1/2 ,
1/2 .

○ 2005

.
- , 1/2
.

○ 2009

.
- 1/3
.

○ 「

」 1998 「
」
2007 「
」
2009
「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2005년	2009년 개정
근거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영 농 조 합 법 인	취 지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 합리화 로 생산성 제고 - 농산물공동출하,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농 지	- 농지소유 가능 - 소유상한 규정 없음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 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농작업대행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주 체	- 당해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1ha 미만 농지소유자	- 유지 -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 자	- 농지와 현물에 한정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준조합원 출자 액은 총출자액 의 1/3 이하로 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타 법	- 민법의 조합규정 - 무한책임			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
농 업 회 사 법 인	취 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설 립		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통지	폐지
	농 지 소 유	불가능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	소유가능(농업인 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농업인일 것)
	사 업	- 농업경영 - 농작업대행 (농가당 위탁상한 3ha)	위탁상한 3ha 폐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 대행 - 부대사업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계속)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2005년	2009년 개정
농 업 회 사 법 인	주 체	농민	농민·생산자단체· 농지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개량조합 삭제	
	출 자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 (주식회사는 1/3) 이하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
	타 법	▪ 상법의 회사규정 ▪ 무한, 유한책임				

2.

2.1. 농업법인의 지위와 성격

○ 「
 (16) (19)
 , , .
 .
○ , ‘ , ,
 ‘ , , ,
 .

표 2-2.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성격 비교

구 분	조 합 법 인	회 사 법 인
목적	공동의 이익 증진	영리 행위
자본금	금액 제한 없음	형태별로 최저한도 설정
지분양도	조합의 승인 필요	사원 간의 양도는 자유 사원 이외의 양도는 총회 의결
의결권	1인 1표 원칙	1구좌 1표
주요의사결정	조합원 총회에 의함	대표자(사장)의 권한

○ ,

.

- : 5 ,

(. 2 , 2~50 ,

1)

- :

.

9/10 .

표 2-3. 회사법인의 형태별 특성

구 분	합 명 회 사	합 자 회 사	유 한 회 사	주 식 회 사
구성원	무한책임사원	유·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구성원 수	2명 이상	유·무한 각1인 이상	2~50명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운영기구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이사, 감사 1인 이상	이사, 감사 1인 이상
의결권	출자좌수당 1표	출자좌수당 1표	출자좌수당 1표	1주당 1표
지분양도	타사원의 과반수 동의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타사원 전원 동의	무제한 양도 가능
정관공증	공증 필요 없음	공증 필요 없음	공증 받아야 함	공증 받아야 함
대표선임	사원 중에서 선임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	사원 중에서 선임	이사 중에서 선임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3).

○ 1
1 , .
- 1 1 .
- , .

2.2.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 , ((2008.7.23 38) 48 4).

(1)

· 1

-

. . ,

.

.

5

5

(: , ,
,).

1/4

.

.

.

1

(,

)

.

. 1 3

(, , , ,
,)

. . ,

.

.

(2)

○

.

16

(3)

· (,
)
·
·
· ,
(: ,)
· 3
○
·
- 3
13
-
·

2.3. 농업법인 관련 세제

- ·
-
·
○

표 2-4. 농업법인의 조세감면 요약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 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 조합원 수×1,200만 원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 기타소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 포함 4년 동안 50% 감면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 1인당 1,200만 원(원천징수세율 5%, 지방소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좌동
양도소득세 추징	• 출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좌동
기타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와 초지 외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사항 없음

표 2-4. 농업법인의 조세감면 요약 (계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 감면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좌동
취득세 감면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 내 취득하는 영농부동산은 전액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50% 감면	좌동
등록면허세 감면	• 설립관련 등록면허세 전액 감면	좌동
재산세 감면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좌동

: , , 2010.1.

3.

3.1. 농업법인의 설립 현황

○ 12
 , 2009 .
- 2009 6,824 8.2%
 . 5,597 10.3%
 , 940 1.3% .
- 59% ,
 .

표 2-5. 농업법인의 설립 동향

단위: 개소, %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5,626	5,650	5,854	6,306	6,824	518	8.2
영농조합법인	4,293	4,410	4,624	5,075	5,597	522	10.3
농업회사법인	967	898	896	928	940	12	1.3
일반회사	88	66	62	56	43	-13	-23.2
기 타	278	276	272	247	244	-3	-1.2

표 2-6.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현황(2009년)

단위: 개소(%)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
계	6,537(100.0)	3,821(58.5)	1,081(16.50)	1,635(25.0)
영농조합법인	5,597(100.0)	3,355(59.9)	822(14.7)	1,420(25.3)
농업회사법인	940(100.0)	466(49.6)	259(27.6)	215(22.9)

: , , 2010.

3.2.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2009 12 8 2,495 ,
 93.2% , 6.7% .
 - 16.9 , 17.4 ,
 13.8 . 1 2,725 7,000 ,
 2 6,000 , 87.2%,
 12.8% .

- 5~9 63.7% ,
 10~49 17.8%, 5 12.9%, 50 5.8% .
 1 ~5 45.1%, 5,000 ~1 23.1%,
 5,000 19.9%, 5 11.8% .

표 2-7.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 및 출자금 현황(200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출 자 법인 수	출자자 수				출자금			
		계	농업인	비 농업인	법인당	계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법인당
합 계	4,889	82,495 (100.0)	76,855 (93.2)	5,498 (6.7)	16.9	1,272,574 (100.0)	1,109,106 (87.2)	163,468 (12.8)	260.3
영농조합	4,171	72,552	68,194	4,302	17.4	918,569	791,868	126,701	220.2
농업회사	718	9,943	8,661	1,196	13.8	354,005	317,238	36,767	354.6

: 1) , .

2) (142) .
 : , , 2010.

○ 2009 12 3 7,681 ,

2 4,763 .

- 7.7 , 7.1 ,

10.9 .

- , 5 62.7%, 5~9

26.4%, 10~49 10.4%, 50 0.5%

.

표 2-8.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 현황(2009년)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	종사자 합 계	상근종사자			임시/일일 종사자	법인당 종사자 수
			계	출자자	고용		
합 계	4,902	37,681 (100.0)	24,763 (65.7)	11,757 (31.2)	13,006 (34.5)	12,918 (34.2)	7.7
영농조합법인	4,177	29,803	19,654	10,147	9,507	10,149	7.1
농업회사법인	725	7,878	5,109	1,610	3,499	2,769	10.9

○ () , 1,951
(39.8%), 1,052 (21.5%), 853 (17.4%),
352 (7.2%) .

표 2-9. 농업법인의 수입유형별 분포(2009년)

단위: 개(%)

구 분	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 서비스	기 타 사업수입
합 계	4,902 (100.0)	1,951 (39.8)	853 (17.4)	1,052 (21.5)	352 (7.2)	694 (14.2)
영농조합법인	4,177	1,668	717	926	249	617
농업회사법인	725	283	136	126	103	77

: , 2010.

제 3 장

1.

1.1. 마을공동사업체의 추진 경과

○

,

.

○ 1970

,

,

,

.

.

,

,

.

-

1990

,

.

○

1970

2008

1 9,287

2009

(‘ ’)

표 3-1. 농협 작목반의 품목류별 현황(2008년)

단위: 개소(%)

계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화훼, 기타
19,287	2,821	5,180	8,241	1,221	1,824
(100.0)	(14.6)	(26.9)	(42.7)	(6.3)	(9.5)

: , , 2009.

○ 2000

2001

, 2002

2004

, 2002

○

2001

1

10

(10)

, 2004

- 2001 9 2002 14
23 , 2010
.

표 3-2. 정부지원 농촌마을공동사업 현황(2009년)

사업명	착수 연도	주요내용	소관부처	실적(개소)	
				2009년	누 계
아름마을가꾸기	2001	주민자율적 마을개발 시범사업 방식. 공간정비, 공동이용 시설 등. 10억 원 이상 지원	행정안전부	-	23
정보화마을 추진사업	2001	정보인프라(광케이블, PC, 소프트웨어 등), 정보화교육, 전국네트워크 조성 등	행정안전부	12	382
자연생태 우수마을	2001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 또는 복원한 사례지역. 3년간 지정, 마을당 1천만 원 지원	환경부	16	117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2002	20호 이상 마을 대상. 체험장, 편의시설, 경관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마을당 2억 원(국비 1억 원)	농림수산 식품부	78	442
농촌전통테마 마을 육성사업	200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생산·가공·판매시설, 체험시설, 숙박 편의시설 등. 마을당 2년간 2억 원 지원	농촌진흥청	30	168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2004	마을권역 단위로 종합개발. 마을경관정비,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사업 등. 3년간 50억~70억 원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45 (권역)	176 (권역)

: , 3~5
:

26

○

, 2001 3
1
-
(ADSL)
PC
2001 11 25 , 2003
78 , 2004 88 , 2005 89 , 2006 26 ,
2007 34 , 2008 30 , 2009 8 12
382

○ 2001

(Green Tourism,
2002
-
20
1)
2 (1 ,
1)
2002 44 (18+ 26)
2009 78 , 2009
442

○

2002 2009
.
.

- 1 1 2
 , , ,
 , , ,
 .
 - 2002 9 , 2003 18 , 2004 17 ,
 2005 21 , 2006 25 , 2007 21 , 2008 27
 , 2009 30 168 .

○ (farm stay)

1999 2010 233

·
 - ·
 - ·

5

,
 .

○ 2006

(3 100).

- , ,
 , , .

○ 2004

2017 , 70

·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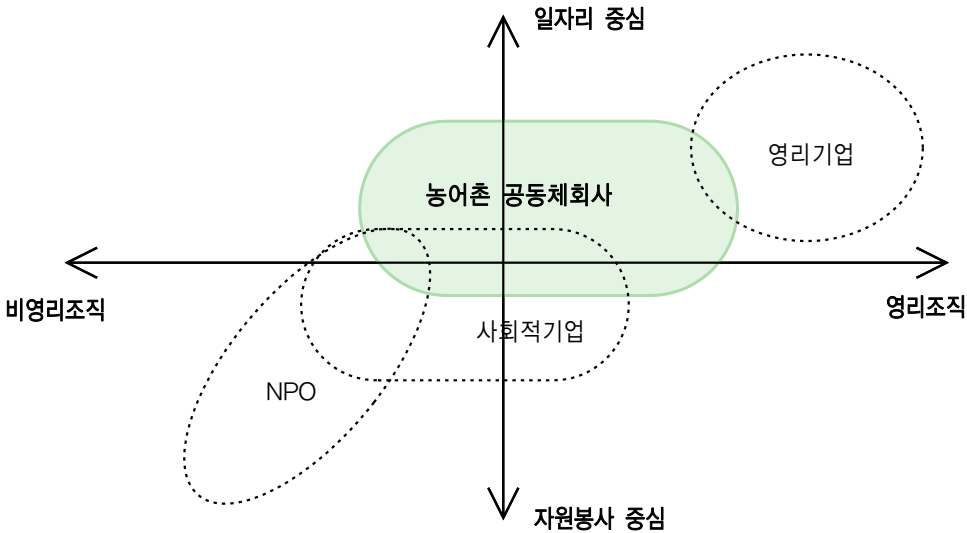
·

- : ,
- :
- (1)
- :
- :
- :
- :
- :
- :
- :
- : 5 40 ~70 (),
70%, 30%(: 80%, 20%)
- : ,

1.2.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의 개요

- 2010 4
「 」, 2015 3,000
.
-
.

그림 3-1.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위상



①

②

③ $\therefore$,

④ ∴ ,

O

②

- , ,

- ,

* (), .

(), ()

- 1,274 · (1,181, 93)

,

③

- , 3,000

- :

, , ,

* 5,000 (50%, 50%) , 3

④

- , , ,

- · · ·

⑤

- : 「 」 ('09.11.27

), 「() 」

- :

- :

[참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요

○

① : , ,

- : 「 」 2
 , 「 」 2
 , 「 」 2 2 , 「
 」 2 ,

$$\textcircled{2} \quad :$$

- • : 30%
- :
- (2 3)
30%
- :

20%

③ :

(

-) 30%
- ④ : ,
- ⑤ : (9)
- , , , (),
- ⑥ () :
- 2/3
-

표 3-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

	지원 내역	비고
경영지원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 비용 제공 • 연간 1천만 원, 3년 2천만 원 한도 내 • 예비는 연간 3백만 원, 3년 5백만 원 내	포로보노(무료 경영 봉사단) 연계
세제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4년간 면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4년까지, '10 신설)	세금감면은 효과 적음 피고용인 전체에 지원 가능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시 3명 이내 월 15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예비 2년, 사회적기업 3년 내 지원 • 월 859천 원('10년)과 사회보험료 8.5% • 연차별로 자부담 늘림	2010년 1,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
사업개발비 지원	R&D,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비용 지원 • 7천만 원(예비는 3천만 원 한도) • 노동부와 지자체 매칭펀드	2010년 신설 일부 시설구입도 가능

: .

34

2.

○

. 2010

.

○

. 2010 10

,

.

845

,

210

.

-

. , (, , , (, , (, (,) , () .

-

210

. 56 , . 34 ,

120

.

-

.

. .

,

.

○

120

,

< 3-4>

- 58 (48.3%)
 , 22 (18.3%), 22 (18.3%),
 18 (15.0%) ,
 .
 .
 -
 61 (18.3%) , 53
 (44.2%), 5 (4.2%), 1 (0.8%)
 .

표 3-4.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조직 형태별 분포(2010년)

단위: 개소(%)

	계	임의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간단체, 기타
합 계	120 (100.0)	61 (50.8)	53 (44.2)	1 (0.8)	5 (4.2)
농식품산업형	22 (18.3)	6	15	-	1
도농교류형	58 (48.3)	37	20	-	1
지역개발형	22 (18.3)	7	13	-	2
사회복지서비스형	-	-	-	-	-
복합형	18 (15.0)	11	5	1	1

:

○

, , 2009 12 2010 18
 30

- 2 , 3 ,

4 , 4 , 5 , 5 , 5
 , 2 .
 - 10 ,
 20 .
 .

○ , , ,
 .

2.1. 여주군 능서면 광대2리 “넓은들 녹색농촌체험마을”

○
 - IC 20
 .
 - 82 190 . , , ,
 .
 - 2002 2003
 . PC 20 , 100 .
 2 , 3,300m²
 *
 - 2004 1 1 . 2
 .
 - 2009 . 2
 + 4,000 (+) 200m²(
 430m²)
 * : 2

-
- 2010 . (, , , ,), (), , * 5,000 / , 3 + =2 - 1 . , 2,000 - 1 1 3 . 1,100
 -
 - 2010 , . - . - , () .

그림 3-2. 광대2리 녹색농촌체험관



그림 3-3. 광대2리 김치가공체험장



2.2. 이천시 율면 석산2리 “부래미마을”

○

- 2 .
- 30 (70) , , (,)
- * 3
- 2002 (富來美) . (佛岩里)
- 2003 . 2
- 2003 . PC 15 ,
- 2004 () , 5,000
- 2004
- 2005 (6), 65
- 6,000
- 2007 . 1,282m²(1 , 2)
- (807m²), (215m²), (260m², 2 9)
- 2008 ‘ , 90m² .
- 2009 2

○

- , , , ,
- 3 . 1 1 5,000 2 .
- 10%

○

- 2008 ,

- : ,

그림 3-4. 부래미마을 입구



그림 3-5. 부래미마을 도농교류센터



2.3.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

- . 40 (70)

79ha(20ha, 59ha)

* 43 (90)

- 2003 ,

- 2004

- 2007 . 20 1 7,000

* 2010 26 , 2 6,000

* 7 (2, 2,

1, 2)

- 2010

○

- (, , , , ,) , , , * : '04 7,107 → '09 3 300 * : '04 1 2,500 → 4 5,200 - (4) *

2006 9

2010 35

- * , , (), , , () 6 * 10%, 70% , '09 170 ~700 . *

○

- , - : (:) -

그림 3-6. 한드미마을 입구



그림 3-7. 한드미마을 마을회관



2.4.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
- (七甲山) .
- (天庄湖)
- 37 . 14.2ha(4 3,000)
- ,
- 2004 (5).
- 28 (830m², 2 , ,),
- (1 3,200m²), (1,000m²), (3
- 3,000m²)
- * (20)
- * . 5
- 2008

- 2009 7 ‘ ,
: 37 1 + 7 + 1
500 , 2,000
5,400

○

- , (,),
- 20 .
-
* : 70%, 20%, 10%
* 1 2,000
- 2010 150 . (12)
*

○

-
- ,
.
- ‘ ,

그림 3-8. 천장리 마을회관



그림 3-9. 천장리 도농교류센터



2.5.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창포마을”

○

- , , , 4 .
200 , 500
* , 8 40 . 1998
- 2004 4 ‘ ,
* (RIS) 13 , 7
- 2006 ‘ 1 ’() .
- 2006
- 2006 ‘ ,
* 50 (7 ×1000 +) 8,400 . 2,000
2,000m² .
* (2), (1 5,000),
,
* 2 m² .
- 2007 8 ‘ , .
1 2
- 2009 (43). ,
,

○

- , , , ,

2

- , , ,

- : 20 (: 5 ,

3). 2009 3,000 (1,500

1,500)

*

* 120 (108 + 12)

○

-

* 200

그림 3-10. 창포마을 입구



그림 3-11. 창포마을 체험안내 포스터

체험 종류		체험가격	비 고
기본 프로그램	자연속에서		송수간 1종 거지잡
	전통놀이	5,000원	농민기, 전통놀이, 그네타기
	농작기 익히 주기		역사체험
선택 프로그램	농작기 익히 주기	4,000원	비누 1장 가져감
	김도둑잡기 체험하기	1,500원	반찬 제공
	농작기 익히	4,000원	농작기 익히로 일할 수있음(2명)
	다음의 두주체험	2,000원	각종과 소머리 및 찜

2010년 9월 14일 ~ 11월 2일

※체험은 무료, 체험객은 1인당 1,000원

※체험객은 1인당 1,000원

※체험객은 1인당 1,000원

※체험객은 1인당 1,000원

2.6.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유기쌀 작목반”

- - .
 - 800ha, 400 ,
2ha ,
() .
 - 16% .
 - 4 1 2,000 (6,000
+ 6,000) , ‘ ,
.
- - 1995 .
 - 24 40ha ,
12 , 12
.
 - 2009 2ha (10ha) .
 - 2010 ‘ , 2 1,000
1ha .
2 7,000 .
* (3,300m²) ,
(1,600m²) ,

- . (, ,).
-
- .

그림 3-12. 신평리 들녘 전경



그림 3-13. 신평리 공동육묘시설



2.7. 청원군 북이면 화성리 “양지말영농조합법인”

-
- 240ha , + .
-
- 2005 5 . 5,000

3 .

80% 2009

27 ‘ , .

* 2 7,000 , ,

* 6 21

2009

10ha , 2010 27ha

80kg 16 ,

,

○

,

.

.

그림 3-14. 양지말영농조합 정미소 전경



48

3.

3.1. 집락영농의 동향

○

,

‘ ,

.

-

,

.

○

.

,

,

6

,

,

,

,

.

-

‘ ,

.

○

2000 9,961

2009 2

1 3,436

.

-

, ,

,

.

. ,

.

○

‘1 1 ’

.

-

,

,

,

.

,

,

1

2 , 3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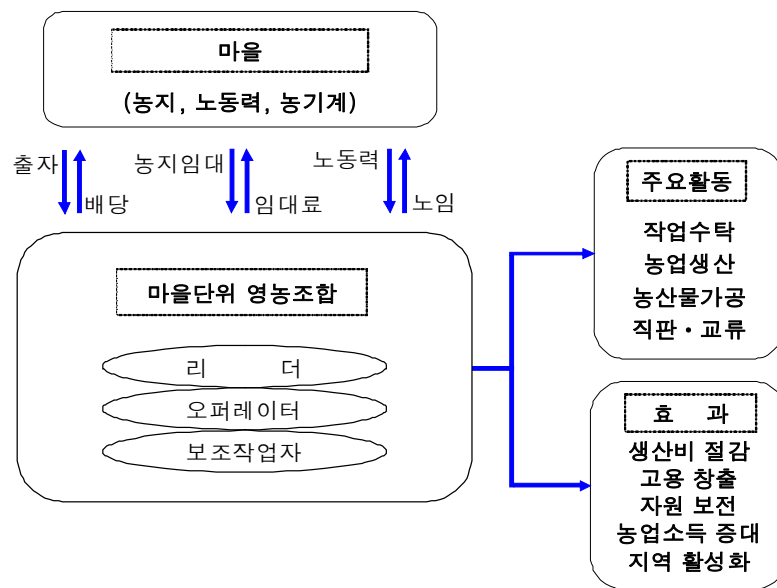
,

,

,

.

그림 3-15. 일본 집락영농 개념도



3.2. 집락영농의 사례: 수숙영농조합¹

(1)

○ 4 , 268 (2000
) 62 . 53ha , 24ha(44.1%)
 , 21ha(39.8%) .
 - 10 1~2ha 40 , 30

¹ 品川優, 條件不利地域農業-日本と韓國(筑波書房, 2010) ‘ 5

- ，
- 2009 30 (20ha), 15 (4.5ha) .
- 4 , , , , , .
- (2)
- 1990~1991 5~6ha 10a . 1993~1994 18ha 10a .
- 2000 .
- 2002 .
-
- .

- 2002 3 , 2003
-
- 52 3,000
- 16
-
- 2003 4.4ha
-
- ,
- ,
- .
- .
-
- 3
- .
- 2005
- .
- .

-

,

.

(3)

○ 2005

.

-

4

,

.

-

A ()

,

,

,

.

○

A

.

-

,

-

,

-

,

,

-

,

A

,

-

,

.

○ 2006

‘

’

‘ ’ .

- 2 54 , 57

3

1 3,000 ,

12ha ,

4ha 18ha .

- 12ha 10ha 2ha ,

5~6 (60) ,

1 ,

6

1,500 , 1,000 ,

1,500 , 10a 1 .

200

()

- ,

,

.

4.

○

.

○

.

-

.

-

,

.

(: K)

(: B)

.

-

(H , C

).

-

,

.

○

,

.

-

(,)

()

,

(Y).

-
- .
- (: B , O).
-
- .
- ,
- .
-
- (: C , H).
-
- ,
- .
- .
-
- ,
- .
-
- (: H)
-
- .
-
- ,
- ,
- ,
- ,
- ,
- ,
- ()
- .

제 4 장

1.

1.1. 법인경영의 유리성

○

.

○

.

- , ()

. ,

,

.

.

.

.

.

- , (agri-business)

.

,



표 4-1. 개인경영과 협업경영의 성격 비교

구 분	개인경영	협 업 경 영	
		임 의 조 직	농 업 법 인
경영체 성격	단독 자연인	복수 자연인	복수 출자자의 법인
사업 계속성	사망으로 종결	구성원 해체로 소멸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책임 형태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 또는 유한책임
자금 조달	개인의 투자	구성원의 투자	구성원 출자, 차입금 등
토지 조달	상속, 구입, 차입	구성원의 제공	출자, 구입, 차입
의사 결정	경영주 단독	구성원의 합의	구성원, 사원의 합의
소유자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생존하는 구성원에 매각	지분은 유산 상속으로 보전

1.2.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의 의의¹⁾

○

1

- (,)
.
- .
 - .
 - .
 - .

1.3.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의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1. 마을공동사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의 관계 정립

-
- ,
- .

○

.

-

,

,

.

.

-

,

.

.

표 4-2.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공동사업체	사회적기업체
조직체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체	지역단위 공동사업체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농업경영의 규모화	지역의 공동사업, 공동재산 관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담당
사업 내용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도농교류, 지역개발, 농식품가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역 범위	지역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읍·면 내	마을 단위, 읍·면 단위, 시·군 단위	대체로 시·군 단위 이상
구성원	농업인 중심	마을 주민 중심 (농업인 포함)	특별한 제한 없음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 주민의 일부인 조합원의 이익 추구	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 관계	지역 주민 및 그 이상 협력 관계

○

，
·
， ‘()’
，
·

2.2. 기존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

○

- “
·
，
·
·

○

，
·
- ，
·
·
·

* (1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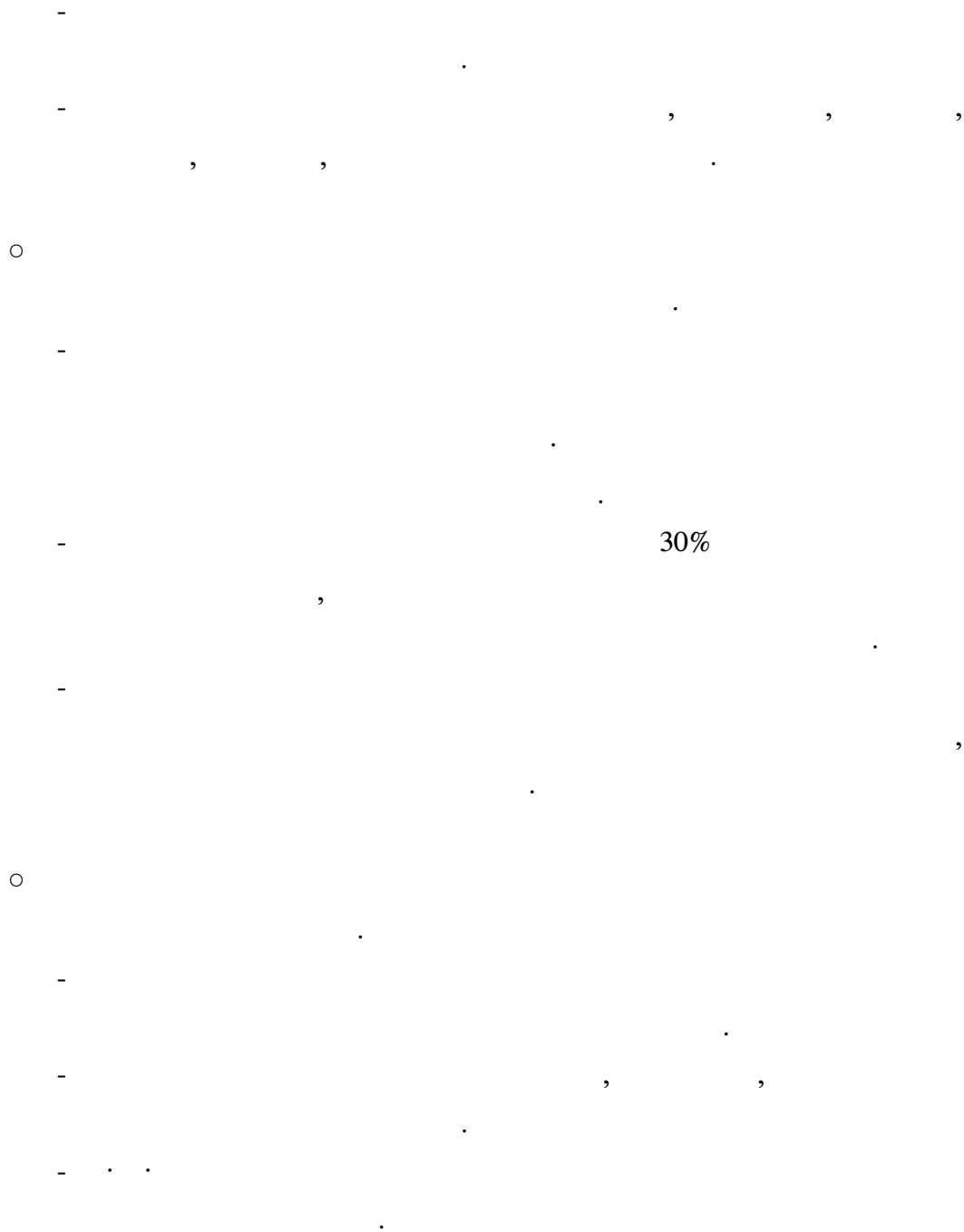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보완

- .



1



()

[2009.11.28] [9717 , 2009. 5.27,]

1

1 ()

,

.

2 () . < 2009.5.27>

1. “ ” 「 . 」 3 2

.

2. “ ” 16 19

.

3. “ ” .

4. “ ” 「 . 」 3 2

.

5. “ ” 16 19

.

6 () ① 5 (“ ”)

② 1

7 ()

8 ()

3

4 () ① 「 」 40

(“ ”) . <

2009.5.27>

② 1

5 () ① 4
， ()
「
」
.
.
②
③ 2
.
.
6 () ① 5
， (“ ”)
.
② 1
，
.
7 ()
.
8 ()
.
.

4

12 () ① 「
」
(“ ”)

② , ,

13 () ① .

②

14 () ①

② 1 .

15 () ① 14

. , 1

1.

2. 13

② 1

5

16 () ①

「 . . .
 」 3 4
 (“ ”) 5
 . < 2009.5.27>

② . . .
 「 .
 」 3 4 (“ ”
) 5 . <
 2009.5.27>

③ ,
 .
 ④ 「 」 176
 . (.)
 .) (.)
 .

⑤ , , ,
 .

⑥ 「 」 3 , 4 , 5 2 · 3 , 6 15
 , 17 29 , 56 58 76
 .

⑦ 「 」 .
 17 () ①

②

③

④

・ , 「 」 9 2

⑤

18 () ①

②

③

1 2
2 ,

④

3

⑤

3

⑥ 1 2
2 , 3
 ,

⑦ 2
6
2

19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16 4

⑥ . ,

⑦ 17 3
17 4 5 .

⑧ 「 」 .

20 () ①

,

,

,

.

② .

.

③ .

2

.

.

.

6

21 () ①

.

②

.

③

2

.

22 () ①

.

.

.

②

.

.

③

.

④
· , 1
·
1.
2.
3. · ,

⑤ 2 ,
·
23 () ①

②

③
·
· , ,
·
24 () 22 2
23

25 () ①
·

·

② 1

③ 1 .

26 () ①

② 1

27 () ①

“ ” (“

②

③

6

1

1.

2.

3. 1

④

7 , 8 ,

[2009.10. 8] [21774 , 2009.10. 8,]

1 () 「 」

.

2 () ① 「 」

(“ ”) 4 1 “ ”

.

1. : . ,
 . , , .
 , ,
 ,

2. : . ,
 . , . , ,
 , , .

② 4 1 “ ”

.

1. 1 1 . ,
 . , ,
 .

2. 1 1 . ,

3. 1 2 . ,
 . , .

4. 1 2 .

3 () 5 1

4 () ① 12 1
(“ ”)

② 1 .

1. :

2. : 5

3

③ 2 1

1. :
「 」 19 1 1 「 」 197

2. :
「 」 3 1 1

5 ()

6 ()

4

7 () ① 13 1

1. 4 2 1

2. 4 2 1 (

)

② 1 「 」 4
1 1

8 () 16 2 “

1. 「 」 (“ ”)

2. .

9 () ① 16 3
(“ ”)

- ② 1 .
- 1. 12 1 1 4 , 8 13
 - 2. ()
 - 3. 2

- 4.
- ③ 1 .
- 1.
 - 2.
 - 3.
 - 4.

10 () ① , .

② , .

- 11 () ① .
- 1.
 - 2. .
 - 3. .
 - 4.
 - 5.
- ② .
- 1.
 - 2. .

3.

4.

12 () ①

.

1.

2.

3.

4.

5. (.)

6. , (除名)

7.

8. . 1

9.

10.

11.

12. ,

13.

②

.

13 ()

.

1.

2.

3.

4. 16 4 「 」 176

5. 5 1 5 ()

6.

14 () ① 17 2

.

1.

2.

3.

. .

4.

② 17 5

.

1.

2.

.

15 () 17 3

.

.

16 ()

「 」 9 2

.

1.

2. 1

17 () ①

19 1

- .
- 1.
 - 2.
 - 3.
 - 4.
- ② 19 3 .
- 1.
 - 2.
 - 3.
 - 4.
- 18 () ① 19 2
- 100 90 .
- ② 19 4 100 90
- .
- 19 () ①
- .
- 1.
 - 2.
 - 3.
 - 4.
 5. (灌溉施設)
- ② .
- 1.
 - 2.
 - 3.

4. .
20 ()

21 () ① 27 1

1. 27 1

2.
② 27 1
1

. . .

22 () 29

. .

1. 10 1
2. 33 1 3

23 () 33 1

.

< 21774 ,2009.10.8>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한다. 다만,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농업 소득세 (‘10.1.1부터 폐지)	<중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중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2010.1.1/중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단, 3년 내 출자지분을 양도 시 세액을 추징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 면제 ◇ 기타 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 원 면제, 12백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 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좌 동 ◇ 기타 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 (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3호)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과세	좌 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좌 동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 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좌 동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법 266조제7항)	◇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취득일로부터 1년 내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정 ○ 감면 세부내용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 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	좌 동
설립등록세 면제 (상동)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좌 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및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좌 동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원분 면제 제267조제3항)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 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 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 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 성함.	좌 동

『 』, 2006.
『 』, () , 2007.
『 』, 2008.7.
『 』(), 2009.
『2010 』, 2010.
『 』, 2010.
『 』, 2010.4.
『 2010』, 2010.
『 』, 2009.9.
『 (CB) 』, 81 ,
, 2010.10.
『 』,
, 2010.
『 』, 15
, 2010.10.
『 ()』, 2010.6.
『 』,
, 2007.

田代洋一,『集落営農と農業生産法人: 農の協同を紡ぐ』, 筑波書房, 2006.

品川優,『条件不利地域農業-日本と韓国』, 筑波書房, 2010.

www.socialenterprise.org.uk.

정책연구보고 P135

6-0007 (1979. 5. 25)
2010. 12. 15.
2010. 12. 15.

130-710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ISBN: 978-89-6013-204-7 93520

•

•
